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7
----------	------

발의연월일 : 2010년 11월 일
발 의 자 : 정훈·김용 의원 등 8인

□ 제안이유

-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성남시의회 의원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제명의 법률고문을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 현행 법률고문 2인을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각각 2인으로 조정함. (안 제2조)
-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함. (안 제3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함. (안 제4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과 자문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제8조)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각각 2인으로 한다.

제3조(고문의 역할·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2.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고문의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성남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의 퇴 사 항				처 리 결 과		
년월일	건명	의퇴인	의퇴내용	년월일	고문인	처리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 <u>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u>	제명 : <u>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u>법률고문</u> (이하 “ <u>법률고문</u>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u>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 (위촉과 해촉)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법령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6.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2조(정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 <u>고문</u> ”이라 한다)은 각각 2인으로 한다. 제3조 (고문의 역할 · 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2. <u>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u> 3. <u>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u> 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2.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고문의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성남시의회의장을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비용 및 수당)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 (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